

수 원 도 시 관 리 계 획
(우만 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2026. 07



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계획지구는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58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원월드컵경기장의 주차장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유허토지로서, 광역교통망의 중심지역으로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필요함
- 또한, 주변으로 각종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등 기반시설들이 잘 갖춰진 지역으로 수원월드컵경기장역 역세권 거점 개발을 통한 공간구조 개편이 필요한 지역임
- 이에,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상 주요 정책 과제인 역세권 고밀도와 복합개발 내용을 수용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여 계획적·체계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며,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한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수원 도시관리계획(우만 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 2]의 “2. 개발기본계획”에 해당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2. 개발기본계획 가. 도시의 개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구역면적 : 79,585㎡)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별표2]

1.3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여부 검토

- 계획지구의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하여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표 1.3-1>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여부 검토

구 분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해당여부
보호지역 주변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 개발사업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 (보호지역 외 지역)
보호지역 주변 외 지역	-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개발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 사업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자료 :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 2025.11,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4호

1.4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 2025. 02 :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 공고
- 2025. 03 : 우만테크노밸리 개발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공동 언론발표
- 2025. 07. 10 ~ 07. 24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 실시
- 2026. 01. 05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협의회 기간 : 2026.01.05.~01.16)
- 2026. 02. 13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공개기간 : 2026.02.13.~02.27)
- 2026. 04. 17.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 2026. 04. 23. ~ 06.1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공람
- 2026. 06. 09. : 주민설명회 개최
- 2026. 08.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예정)
- 2026. 11.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예정)

1.5 계획의 내용

1.5.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수원 도시관리계획(우만 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나.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58번지 일원

다. 면 적 : 79,585㎡

라. 계획시행자

- 경기도, 수원시,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원도시공사

마.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5년
- 목표연도 : 2030년

마. 계획승인기관 : 수원특례시

바. 협의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그림 1.5-1) 사업구역 위성사진

1.5.2 계획의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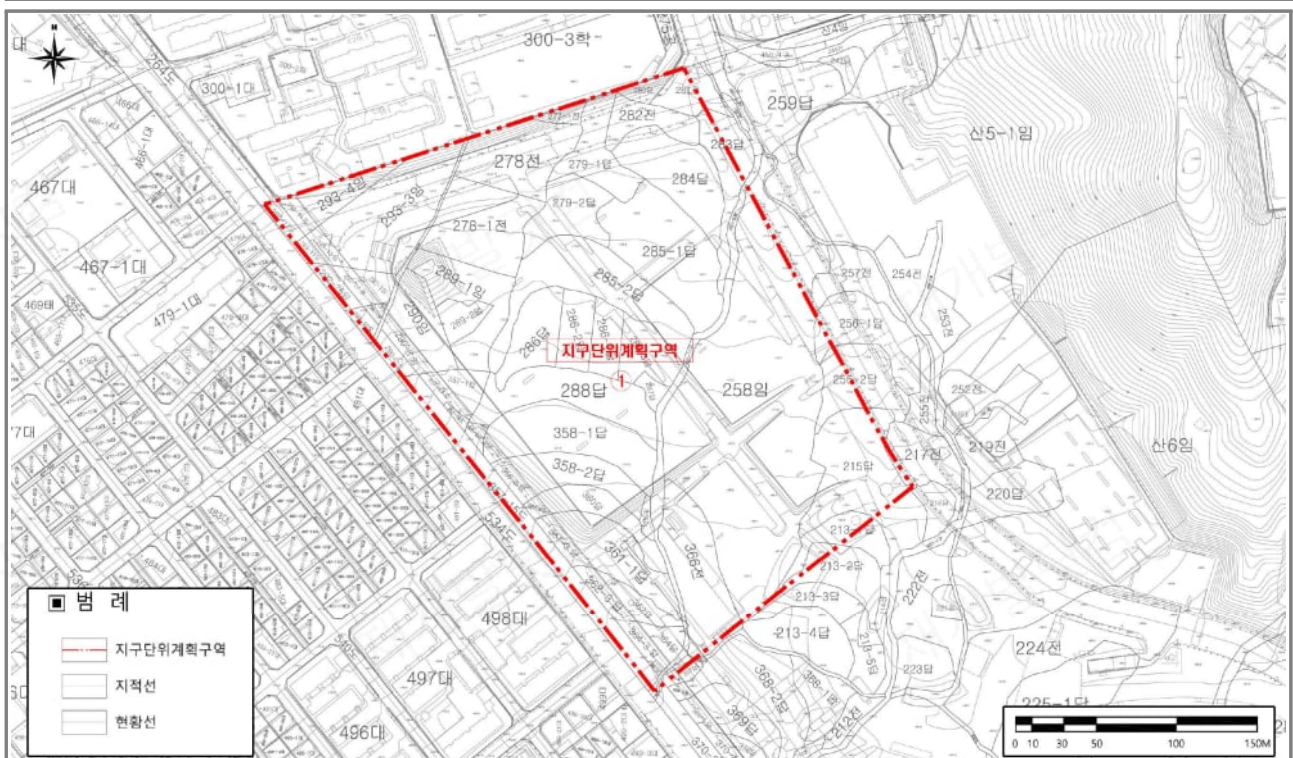
- 수원월드컵 경기장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체계적인 복합개발과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지역개발 혁신의 거점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은 다음과 같음

<표 1.5-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안)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우만 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구역	팔달구 우만동 258번지 일원	-	증)79,585	79,585	-	

<표 1.5-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①	우만 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신설) · 면적 : 79,585㎡	· 수원월드컵경기장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체계적인 복합개발과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지역개발 혁신의 거점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주) 향후 계획 수립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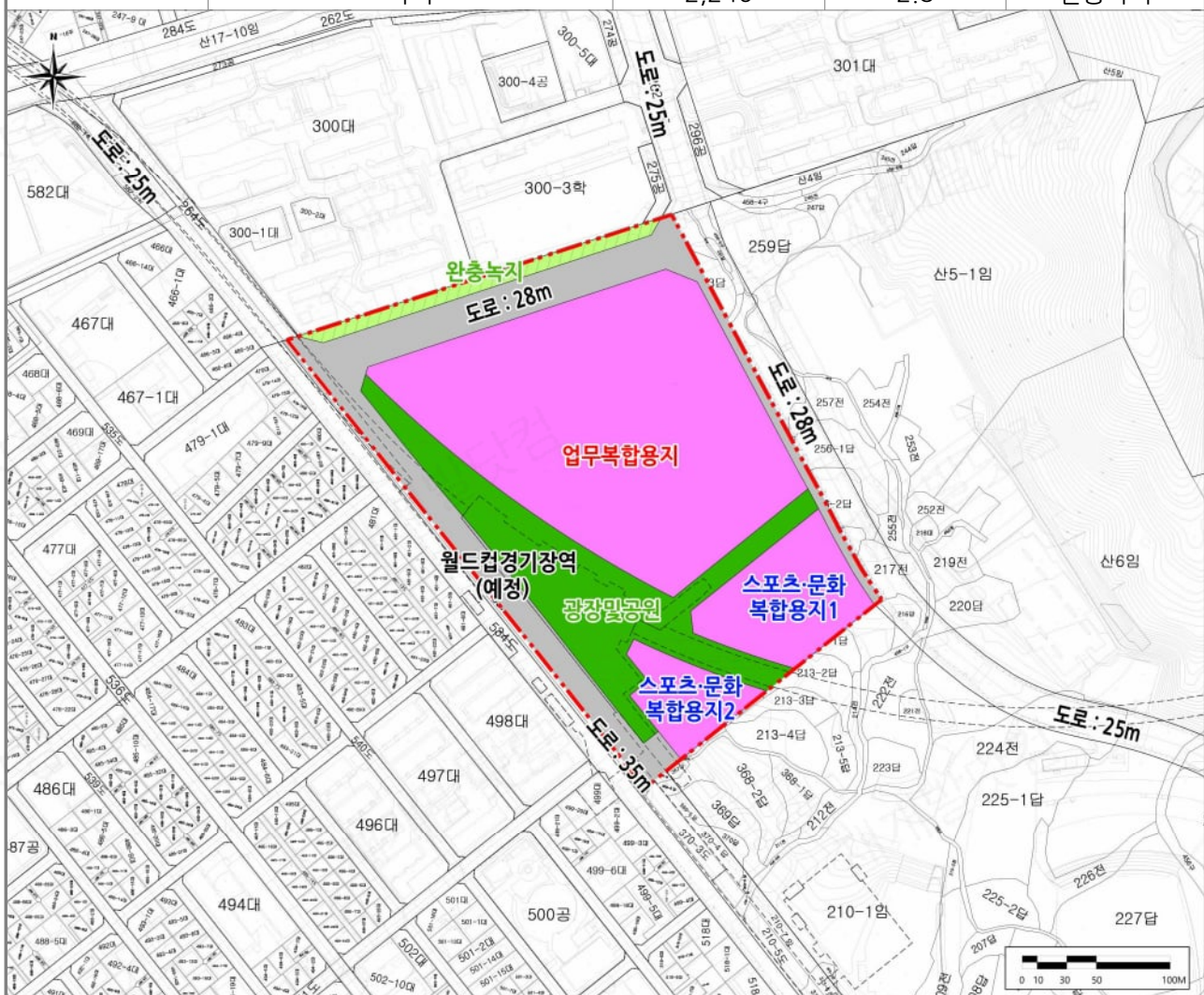
(그림 1.5-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안)

나. 토지이용계획(안)

- 계획지구의 지형적 여건 및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간배치를 도모하고, 토지이용별로 적정하게 배치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립함

<표 1.5-3>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79,585	100.0	
복합용지	소 계	47,411	59.6	
	업무복합용지	36,564	45.9	
	스포츠·문화복합용지 1	7,215	9.1	
	스포츠·문화복합용지 2	3,632	4.6	
기반시설용지	소 계	32,174	40.4	
	도로	15,454	19.4	
	공공공지	14,474	18.2	광장 및 공원
	녹지	2,246	2.8	완충녹지



주)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제2장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1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시행한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개하고자 함

2.2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의견수렴의 개요

가. 주민공람 및 공고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고·공람을 실시하였음

1) 공람

- 공람기간 : 2026년 04월 23일 ~ 2026년 06월 12일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공람장소 :
 -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 우만1동 행정복지센터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2) 공고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공고(수원시 공고 제2026-1035호)
 - 일간신문 : 파이낸셜뉴스(2026년 4월 23일)
 - 지역신문 : 경인일보(2026년 4월 23일)

나. 주민설명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장소 : 우만1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
 - 개최일시 : 2026.06.09.(화) 14:00

다.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제출

- 제출시기 : 2026년 04월 23일 ~ 2026년 06월 19일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 또는 평가정보지원시스템 등록

수원시 공고 제2026-1035호

수원 도시관리계획(우만 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수원 도시관리계획(우만 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23.

수원시장



1. 계획의 개요

- 가. 계획명 : 수원 도시관리계획(우만 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
- 나.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58번지 일원
- 다. 계획규모 : 79,585㎡
- 라. 시행자 : 경기도,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원도시공사,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 마. 승인기관 : 수원시장

2.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공람기간 : 2026. 4. 23.(목) ~ 2026. 6. 12.(금)
[근무시간(09:00~18:00) 내,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나. 공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및 우만1동 행정복지센터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경우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서 열람 가능

3. 주민설명회 개최

- 가. 일시 : 2026. 6. 9.(화) 14:00
- 나. 장소 : 우만1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

4. 주민 등의 의견제출

- 가. 제출기간 : 2026. 4. 23.(목) ~ 2026. 6. 19.(금) (공람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 나. 제출방법 : 서식(주민의견 제출서)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등록 가능

-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도시계획과(☎031-5191-23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그림 2.2-1) 주민공람공고(공고문)

■ 파이낸셜뉴스

사회

2026년 4월 23일 목요일 파이낸셜뉴스 27

‘13억 뇌물’ 감사원 간부 불기소... 작동 못한 檢 보완수사

경쟁이 고위...
한 수사를 노...
를 의혹 사건...
법조수사청...
상부 우려...
제 사건들...
영장 등 2...
■ '검조 개...
22일 경...
부(원재) 부...
부 김오리...
수원 회...
8000원...
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경쟁과 공...
구에 대한...
건 처리를...
공수처는...
영장이 가...
보내고, 경...
관을 둘러...
근거 규명...
있다.

2026년 04월 23일
27면 (공고/고시)

특 집 로 가 도 철 목, 저 목 집 로 가 도 철 목

수원시 공고 제2026-1035호

수원 도시관리계획(우만 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수원 도시관리계획(우만 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23.
수 원 시 장

1. 계획의 개요

- 가. 계획 명 : 수원 도시관리계획(우만 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
- 나.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58번지 일원
- 다. 계획규모 : 79,585㎡
- 라. 시행 자 : 경기도,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원도시공사, (재)경기도시개발공사(주)경기개발공사
- 마. 승인기관 : 수원시장

2.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공람기간 : 2026. 4. 23.(목) ~ 2026. 6. 12.(금)
[근무시간(09:00~18:00) 내,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나. 공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및 우만1동 행정복지센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경우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서 열람 가능

3. 주민설명회 개최

- 가. 일 시 : 2026. 6. 9.(화) 14:00
- 나. 장 소 : 우만1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

4. 주민 등의 의견제출

- 가. 제출기간 : 2026. 4. 23.(목) ~ 2026. 6. 19.(금) (공람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 나. 제출방법 : 서식(주민의견 제출서)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등록 가능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도시계획과(☎031-5191-23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략 목적: 개발과 있는 경기도 수원시 철도역사촌을 통한 사업의 개발 목적
2. 환경영향: 개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수원시 공고 제2026-1035호
수원 도시관리계획(우만 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수원 도시관리계획(우만 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23.
수 원 시 장

-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 명 : 수원 도시관리계획(우만 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
- 나.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58번지 일원
- 다. 계획규모 : 79,585㎡
- 라. 시행 자 : 경기도,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원도시공사, (재)경기도시개발공사(주)경기개발공사
- 마. 승인기관 : 수원시장

-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26. 4. 23.(목) ~ 2026. 6. 12.(금)
[근무시간(09:00~18:00) 내,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나. 공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및 우만1동 행정복지센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경우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서 열람 가능

- 3. 주민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26. 6. 9.(화) 14:00
- 나. 장 소 : 우만1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

- 4. 주민 등의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4. 23.(목) ~ 2026. 6. 19.(금) (공람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 나. 제출방법 : 서식(주민의견 제출서)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등록 가능

-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도시계획과(☎031-5191-23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2.2-2) 주민공람공고(일간신문)

경인일보



경인일보

수원시 공고 제2026-105호

수원 도시관리계획(우만 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수원 도시관리계획(우만 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수 원 시 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 명 : 수원 도시관리계획(우만 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

나.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58번지 일원

다. 계획규모 : 79,585㎡

라. 시행 자 : 경기도,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원도시공사,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마. 승인기관 : 수원시장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26. 4. 23.(목) ~ 2026. 6. 12.(금)

[근무시간(09:00~18:00) 내,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나. 공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및 우만1동 행정복지센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경우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서 열람 가능

3. 주민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26. 6. 9.(화) 14:00

나. 장 소 : 우만1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

4. 주민 등의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4. 23.(목) ~ 2026. 6. 19.(금) (공람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나. 제출방법 : 서식(주민의견 제출서)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등록 가능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031-5191-23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공고 제2026-105호

수원 도시관리계획(우만 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가. 계획 명 : 수원 도시관리계획(우만 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

나.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58번지 일원

다. 계획규모 : 79,585㎡

라. 시행 자 : 경기도,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원도시공사,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마. 승인기관 : 수원시장

가. 공람기간 : 2026. 4. 23.(목) ~ 2026. 6. 12.(금)

[근무시간(09:00~18:00) 내,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나. 공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및 우만1동 행정복지센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경우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서 열람 가능

가. 일 시 : 2026. 6. 9.(화) 14:00

나. 장 소 : 우만1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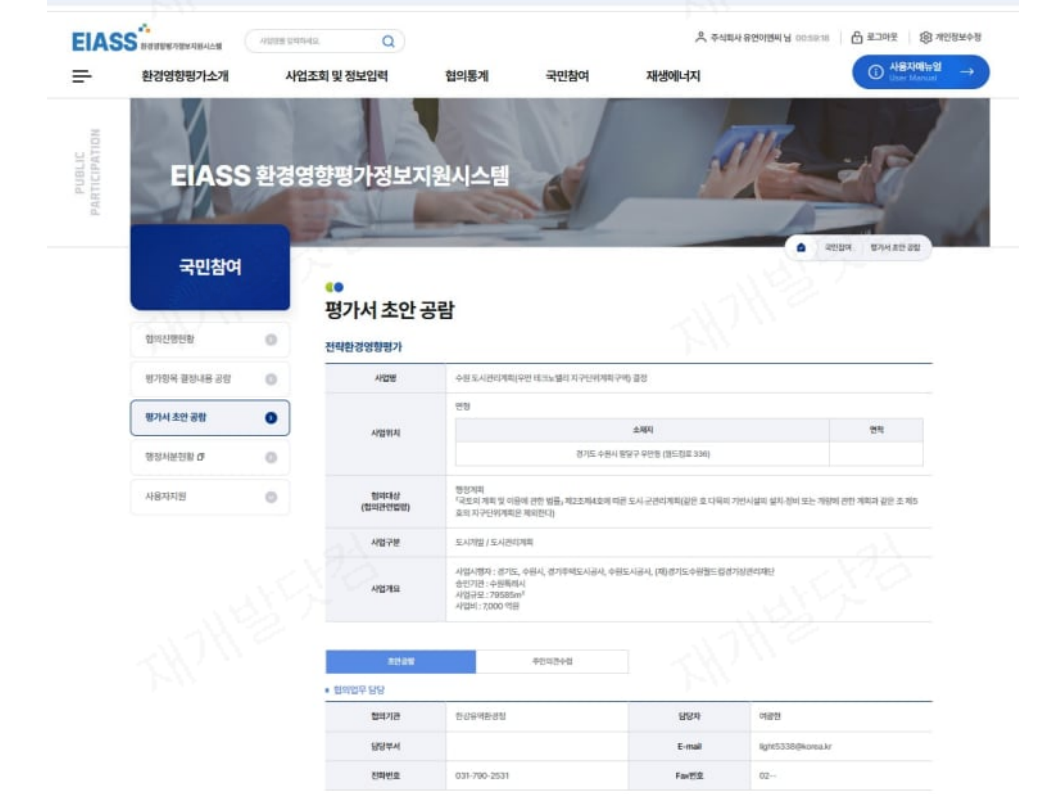
가. 제출기간 : 2026. 4. 23.(목) ~ 2026. 6. 19.(금) (공람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나. 제출방법 : 서식(주민의견 제출서)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등록 가능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031-5191-23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계속) 주민공람공고(지역신문)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시 홈페이지 공지/고시/입법예고 화면. 공지사항 제목: 수원 도시관리계획(우만 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전라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공고/고시/입법예고 메뉴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공고/고시/입법예고 목록이 표시되어 있으며, '공고문(제2026년 1035호).hwp', '주민의견 제출서.hwp', '전략환경영향평가서(요약문).hwp' 등의 문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화면. '국민참여' 메뉴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평가서 초안 공람' 섹션이 표시되어 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사업명: 수원 도시관리계획(우만 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업위치: 연천. 사업대상(협의대상영역): 평안지역. 사업구분: 도시계획 / 도시관리계획. 사업개요: 사업시행자: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수자원공사, 수원도시공사, (주)경기수도수자원공사(주)경기수도수자원공사. 사업규모: 795,000㎡. 사업비: 7,000 억원. 협의입부 담당: 협의기간: 한강유역환경청. 담당자: 이영환. 담당부서: E-mail: light5330@korea.kr. 전략번호: 031-790-2531. Fax번호: 02-.

(그림 2.2-3) 주민공람공고(정보통신망)

<표 2.2-1> 주민설명회 개최

장소	일시	참여인원	의견제출
우만1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	2025. 06. 09.(화) 14:00	약 40인	-



(그림 2.2-4) 주민설명회 사진



(그림 2.2-5) 주민설명회 개최 홍보

2.3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결과

2.3.1 주민제출의견 수렴결과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2026년 4월 23일 ~ 2026년 6월 12일까지(공람기간 만료 후 7일 이내까지 주민 의견 제출) 공람장소인 수원시 도시계획과, 우만 1동 행정복지센터, 정보통신망(수원시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공람을 실시한 결과, 제출된 별도의 주민의견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2.3.2 주민설명회 의견

<표 2.3-1> 주민설명회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주민1	○ 현재 설명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만 설명되고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와 개발 비전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며, 향후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인 개발 방향을 제시바람	○ 현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로 아직 세부 개발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통해 개발 방향을 제시할 계획임	향후 반영
주민2	○ 우만동은 현재도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개발 시 주차난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공영주차장 또는 주차시설 조성 계획이 있는지 궁금함	○ 구체적인 시설계획은 미확정 상태이나 개발 과정에서 주차수요를 고려해 지하주차장, 대체주차장 등 확보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향후 반영
주민3	○ 사업 추진 일정과 향후 남아있는 행정절차가 궁금함 ○ 착공 및 준공 시기를 포함한 전체 사업 일정을 알고싶음	○ 현재는 구역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이며,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걸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있음	향후 반영
주민4	○ 우만주공4단지 인접 완충녹지 구간의 조성계획이 궁금함	○ 기존 도로는 유지할 계획이며, 완충기능 강화를 위한 식재 및 녹지조성 등을 검토하겠음 ○ 향후 세부계획 수립 시 주변 주거지역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음	향후 반영

<표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의견 및 답변 내용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주민5	○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 혜택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 질의	○ 현재는 구역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로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개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겠음	향후 반영
주민6	- 광고 테크노밸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등 다른 테크노밸리와 차별화된 특성이 있는지 - 업무복합용지 및 스포츠복합시설의 구체적인 도입 기능과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수원시 내 각 테크노밸리는 입지 특성과 개발목적에 따라 차별화하여 계획하고 있으며, 우만 테크노밸리는 첨단산업 분야의 중소·연구기업 유치 및 광고 바이오산업과의 연계를 검토하고 있음 - 우만동은 더블역세권 입지를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업무 기능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임	향후 반영

2.3.3 관계기관 의견 수렴결과

가. 경기도청

<표 2.3-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기후환경 정책과	○ 문헌조사 결과 법정보호종(수달, 큰기러기, 맹꽁이 등 11종) 및 경기도보호 야생생물(우수리뚝배기, 해오라기, 도롱뇽 등 6종)이 조사 되었으므로, 종별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필요시 현지조사를 추가 시행하여 보호종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맹꽁이, 도롱뇽 등 소형동물의 고사를 방지하기 위해 탈출경사로 및 방지망을 설치하고 필요시 대체식지로의 이주 등의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에 따른 개체군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함	○ 문헌조사 결과 확인된 법정보호종 및 경기도보호 야생생물에 대하여 종별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 본 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는 행정계획 단계로, 향후 개발계획 수립 시 추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호종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하겠음	반영

<표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기후환경 정책과		○ 또한, 소형동물의 고사 방지를 위하여 방지망 및 탈출경사로 설치 등을 검토하고, 필요 시 포획·이주 등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공사에 따른 개체군 훼손을 최소화하겠음	반영
	○ 현지조사 결과 생태계교란생물 2종(환삼덩굴, 미국쑥부쟁이)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므로, 추후 개별사업 계획 수립 시 현지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분포 및 확산 현황을 파악한 후 “생태계교란생물 현장관리 안내서(2021, 환경부·국립생태원)”를 참고하여 종별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제거를 시행하여야 함	○ 현지조사 결과 발견된 생태계교란생물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제거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음	반영
	○ 계획지구 내 생태면적률, 사업특성, 환경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생태 면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향후 사업 시행 시 목표 생태면적률 40%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검토하시기 바람	○ 추후 개발계획 수립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토대로 생태면적률을 재산정할 계획이며, 목표 생태면적률 40%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반영
	○ 공사 전·중·후 발생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및 발생량을 조사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본 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는 행정계획단계로 향후 개발계획시 공사·운영 단계의 대기질 영향을 검토하고 적정 저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향후 반영
	○ 「미세먼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건설 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세부이행지침」,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등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단계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공사 시행 시 「미세먼지법」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공사시간 조정, 비산먼지 발생 억제 등 단계별 저감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 등 평가지침」 등 관련 계획 및 지침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방안을 세부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 등 평가지침」 등 관련 계획 및 지침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온실가스 배출 저감방안을 향후 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향후 반영

<표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기후환경 정책과	○ 토사유출, 비점오염원 증가, 수계로의 영향, 서식지 교란 등 생태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향후 사업계획 구체화 시 토사유출, 비점오염원 증가 및 생태계 영향을 검토하고,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한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반영하도록 하겠음	향후 반영
	○ 금회 계획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전으로 수질오염총량을 산정할 단계는 아니나, 사업 지구는 “진위A”유역에 해당하므로 향후 세부 개발 계획 수립 시 각 총량관리 기준을 반영한 오염부하량 산정 및 이에 따른 저감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 향후 개발계획 수립시 총량관리 기준을 반영한 오염부하량을 산정할 계획이며,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할당연기계획서를 제출하여 협의할 계획임	반영
	○ 공사 세부계획 수립 시 주변 정온시설(교육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을 고려하여 공사 단계별 소음·진동 영향을 정량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설방음판넬, 방음벽 설치 또는 공사시간 조정 등 적정 소음저감 방안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또한 주변 개발사업과 본 계획의 공사기간이 겹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누적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현재 본 계획지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수립을 목적으로 하여 현 단계에서는 계획수립 단계로 세부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공사중 가장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토공사시 투입되는 장비를 선정하여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가설방음판넬 설치와 이동식 방음벽 등 적절한 소음저감 방안을 제시하겠음	반영
	○ 계획지구 내 조성되어 있는 지장물 및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발생 가능한 건설폐기물, 석면 등을 정량적으로 예측하여야 함	○ 향후 세부적인 지장물 조사를 통해 발생가능한 건설폐기물, 석면 등을 정량적으로 예측할 계획임	향후 반영
	○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녹색건축물 인증 등을 계획한바, 구역별 구체적인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실효성있는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향후 개발계획시 건축물 계획배치 등 세부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므로 구체적인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따른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제시하겠음	향후 반영
	○ 개별공사 계획 수립 시 친환경 건설장비(Euro 5 이상, Tier 3 이상) 사용을 검토하여야 함	○ 공사장비 사용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최신 연식의 건설장비 사용을 검토하여 제시하겠음	반영

<표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기후환경 정책과	○ 추후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사전에 해당 지역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향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시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근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사업 시행 전 사전에 해당 지역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향후 반영
	○ 본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 1호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승인일(인·허가 승인일, 사업계획 확정일 등 포함)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규모 등을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로 통보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됨에 따라 향후 사업 승인일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규모 등을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로 통보하겠음	향후 반영
	○ 본 계획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58번지 일원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작성 시 관계 행정기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 여부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주민의견 수렴결과 등에 대해 반영여부를 제시하겠음	반영
	○ 현 단계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계획수립으로 인한 영향예측이 어려우므로 향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 대상인 경우, 구체적인 환경영향 예측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향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 대상인 경우, 구체적인 환경영향 예측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절차를 이행할 계획임	향후 반영

나. 수원시청

<표 2.3-3>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환경 정책과	○ 계획특성을 고려하여 목표 생태면적률을 40%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제시한 바, 목표 생태면적률을 충족할 수 있도록 투수성포장, 자연지반 녹지 등을 충분히 확보하는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추후 세부개발계획을 수립시 목표 생태면적률 40%를 충족할 수 있도록 투수성포장, 자연지반 녹지 등을 충분히 확보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겠음	향후 반영

<표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환경 정책과	○ 계획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저감대책(민원해소방안 포함)을 신속히 강구·이행하여야 함	○ 향후 계획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저감대책을 신속히 이행할 계획임	향후 반영

다. 한강유역환경청

<표 2.3-4>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1. 총괄 ○ 본 검토의견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58번지 일원 “수원 도시관리계획(우만 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의 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함	○ 초안검토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시 반영하겠음	반영
	2. 세부 의견 가. 계획의 적정성 1)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본 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2040 수원 도시기본계획」 등)과의 연계성, 기본방향 및 추진 전략과의 부합 여부,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본 개발 계획 수립시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기본방향 및 추진 전략과의 부합여부, 계획의 적정성 등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겠음	반영
	○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바, - 계획지구 주변 개발현황 및 인근 유사시설 입지 현황 등을 토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규모(허용 용적률 완화 등 건축계획)의 적정성 검토 ※ 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 계획 및 개발구상 등 관련 자료 등 제시 필요	○ 본 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는 행정계획 단계로 구체적인 개발계획 및 건축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계획 규모에 대한 정량적 검토에는 한계가 있음 ○ 다만, 계획지구 주변 토지이용현황 및 개발현황 등을 검토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제시하고, 향후 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건축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추가 검토·제시하겠음	향후 반영

<표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나) 자연환경의 보전 1) 수환경의 보전 ○ 계획지구 내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향후 세부계획 수립시 계획지구 내 용수 공급 및 하수처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제시하겠음	향후 반영
	○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국립환경과학원, '22.3.)」에 따라 상기 개발사업의 사업 시행 전·후의 오염부하량 발생·배출 및 삭감부하량을 산정·제시하여야 함	○ 향후 세부 개발 계획 수립시 총량관리 기준을 반영한 오염부하량을 산정할 계획이며, 할당연기계획서를 제출하여 협의할 계획임	부분 반영
	○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1631호, 2024.3.13.)」 제28조에 따라 관할지역 시행청으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 받아야 하며, 같은 방침 제2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협의관련 증빙서류를 첨부·제시하여야 함	○ 향후 세부 개발 계획 수립시 총량관리 기준을 반영한 오염부하량을 산정할 계획이며,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할당연기계획서를 제출하여 협의할 계획임	반영
	다) 생활환경의 안정성 ○ 도입시설의 규모 및 건축계획 등을 반영하여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소음·진동 및 일조장해 영향을 정량적으로 예측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향후 세부계획 수립시 도입시설의 규모 및 건축계획을 반영하여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소음·진동 및 일조장해 영향을 정량적으로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향후 반영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온실가스 현황 조사 및 추가 검토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이용시설 현황조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토지·수목 부문 온실가스 저장·흡수량 산정 - 해당 지자체의 온실가스 관련 정책 부합 여부 검토	○ 사업지구 내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토지·수목 부문 온실가스 저장·흡수량을 산정하여 제시하겠음 -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수원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정책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저감방안을 반영하여 제시하겠음	부분 반영

<표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3. 기타 ○금회 계획에 대한 향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적절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절차를 검토·제시하여야 함	○향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적절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절차를 검토·제시할 계획임	향후 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본 초안의견과 관계행정기관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 여부를 요약·제시하고, 반영된 의견은 해당 항목에 작성·제시하여야 함 -본 의견보다 완화된 보전대책을 강구하거나 의견 간 상충 등의 사유로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은 미반영 사유와 함께 대안 제시	○향후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관계행정기관 및 협의기관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의견내용, 반영 여부 및 반영 내용을 요약·제시하겠음	반영
	○평가서 상의 환경현황,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정량화하여야 함 -특히, 현황조사 및 조사결과는 조사자 인적 사항 및 조사자 의견을 첨부 제시하고 환경영향 예측(예측조건, 예측적용 방법, 예측 시 사용계획, 수치 등)은 적용 및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시 환경현황,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가능한 사항은 정량적으로 분석·제시하겠음 -현황조사 및 조사결과는 조사자 인적사항 등을 첨부 제시하고 환경영향 예측은 적용 및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겠음	반영